

특근매식비 연평균 **-3.0%** 감소 추세 국방부·국회 등 6곳은 연평균 **3.8%** 증가

부정집행 관련해 반복되는 감사원 지적
투명성 제고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작성 : 정다연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16년~2021년(안) 정부 예산편성기관 특근매식비 예산 증감 추이 분석

- 요약 -

-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연도별 특근매식비 예산 총액은 2016년 150,924백만원, 2017년 149,112백만원, 2018년 136,106백만원, 2019년 133,777백만원, 2020년 145,857백만원, 2021년(안) 129,042백만원으로 감소 추세
- 특근매식비의 전년대비 증가율(2016~2021년안)은 2017년 -1.20%, 2018년 -8.72%, 2019년 -1.71%, 2020년 9.03%, 2021년 -11.53%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2016~2021년)은 -3.0%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특근매식비가 감소하는 기관(20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에, 같은 기간 특근매식비가 증가하는 기관(6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감소 기관에 비해 11%p 격차가 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 등이 선거 또는 통계조사가 있는 해에만 특근매식비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침상 야근 및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나 외근을 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특근매식비는 업무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음
-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예산의 증감 또는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회식비, 매점 식권 대량 구매, 간식 구매 등 업무추진비로 이용되는 부정집행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특근매식비의 감소가 업무량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

1. 브리핑 배경

- 최근 감사원은 교육부에 특근매식비의 절반(약 11억원) 증빙자료 없이 집행됐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23개 부서에서 특근매식비 약 1300만 원을 예산집행 지침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용도로 집행했다고 주의를 요구함
- 특근매식비 집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16~2021년 정부가 편성하는 특근매식비 규모와 증감추이 등을 살펴봄

2-1. 특근매식비 집행에 대한 감사원 지적

- 특근매식비는 운영경비의 일환으로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각 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의나 기준이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 또는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매식비로 규정하고 있음
- 특근매식비란 ①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와 ②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식비
- 중앙행정기관 등의 경우 기재부가 매년 작성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에 규정된 특근매식비 정의와 단가 등을 따름
- 기획재정부는 특근매식비에 대한 예산 편성시 1인 1식 기준 6,000원으로 작성하도록 함(2021년 지침)

<그림1> 특근매식비 대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근무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특근매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감사원 기관별 감사결과(2015년1월 이후 공개한 감사사항부터 제공)에 따르면,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2015년 이후 6건으로 주의를 받은 기관은 조세심판원(2017년), 국무조정실(2017년), 보건복지부(2017년), 산업통상자원부(2017년), 국방부(2019년), 교육부(2020년) 등임
- 주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특근한 자의 이름과 특근 여부, 특근매식비 금액 등 장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② 부서 회식, 매점, 부서 식권 구매 등에 특근매식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 ③ 특근업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 집행한 경우
 - ④ 1인당 집행 금액 이상의 초과 집행

<표 1> 2015~2020년 감사원 특근매식비에 관한 기관별 감사 결과

공개일자	관련 기관	처분요구 목록	구분	문제점
2020-10-06	교육부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주의	교육부는 특근매식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아 집행액 22억여 원 중 11억여 원이 실제 특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
2019-09-06	국방부	특근매식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국방부는 매년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육해공군 각 군의 특근매식비 예산을 총괄하여 편성. 그러나 국방부 본부의 경우 2017년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6000여만 원을, 2018년에 5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6억 2000여만 원을 특근매식비로 집행. 국방부 본부에 특근매식비 예산이 집중돼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 등을 위배하여 특근과 무관하게 회식 또는 퇴근시 집행하는 사례 발생
2017-07-06	산업통상 자원부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특근과 무관한 점심식사 등에 특근매식비를 집행
2017-04-24	보건복지부	특근매식비 집행내역 관리부적정	통보권고	보건복지부는 식당에서 일괄결제하거나 식권을 대량구매 하는 등 방법으로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면서 사용자,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 등을 관리하지 않아 실제 직원들이 특근하면서 사용했는지 여부 확인할 수 없어 관리방안 마련 필요
		특근매식비 집행부적정	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에 따르면 식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은 출장지에서 특근매식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위배함
2017-03-16	국무조정 실·조세 심판원	특근매식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국무조정실 소속 4개 실국 및 조세심판원은 초과근무와 무관한 점심식사 등에 특근매식비 1억 3000만여 원을 부당 집행

출처: 감사원(<https://www.bai.go.kr/bai/index.do>)

2-2.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특근매식비 및 전년대비 증가율

- 2016~2020년 국회 확정안, 2021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특근매식비 예산 및 증가율을 정리함. 국정원은 비공개 사유로 제외됨

<표 2> 2016~2021년 정부 예산편성기관 특근매식비 규모

(단위: 천원)

	정부 예산편성 기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안)
부(18)							
1	고용노동부	2,846,124	2,837,445	2,884,521	2,859,307	2,763,334	2,714,82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450,369	4,948,229	4,746,489	3,797,712	4,253,615	3,346,961
3	교육부	1,171,912	1,205,122	1,202,990	1,183,059	1,118,035	1,049,590
4	국방부	4,858,389	5,072,734	5,345,160	5,269,240	5,776,889	6,216,884
5	국토교통부	2,739,131	2,660,062	1,183,191	1,035,606	953,737	954,282
6	기획재정부	1,270,729	1,339,285	1,335,450	1,246,035	1,257,743	1,254,465
7	농림축산식품부	1,833,349	1,861,442	1,959,240	1,627,515	1,664,604	1,660,146
8	문화체육관광부	1,838,820	1,884,544	1,824,136	1,939,600	1,986,792	1,961,086
9	법무부	7,818,162	7,871,179	6,610,278	5,868,156	5,709,470	5,576,634
10	보건복지부	2,159,564	2,302,628	2,281,035	2,246,466	2,092,497	2,373,759
11	산업통상자원부	1,049,847	1,050,886	1,052,742	1,060,828	1,102,393	1,144,900
12	여성가족부	160,040	162,038	150,776	157,614	149,231	152,031
13	외교부	1,639,321	1,601,897	1,654,238	1,520,633	1,432,490	1,350,873
14	중소벤처기업부	1,089,025	1,169,986	1,303,338	1,277,786	1,188,608	1,193,474
15	통일부	347,602	316,472	278,669	290,262	259,137	264,771
16	해양수산부	1,164,497	1,211,182	1,234,060	1,074,993	832,510	893,107
17	행정안전부	3,963,890	3,693,435	2,205,092	2,469,976	3,767,736	1,806,680
18	환경부	1,853,354	1,896,492	2,111,633	2,103,165	2,282,013	2,548,931
처(6)							
19	국가보훈처	279,745	299,556	301,676	293,136	259,088	216,000
20	국민안전처	5,162,884	5,168,065	(폐지)			
21	대통령경호처	150,000	110,000	100,000	90,000	70,000	60,000
22	법제처	236,353	239,896	253,790	268,521	267,565	274,803
23	식품의약품안전처	738,984	752,962	705,336	611,024	545,107	544,685

24	인사혁신처	991,351	585,928	481,777	517,077	514,520	514,232
청(16)							
25	경찰청	54,862,828	54,134,811	56,185,964	59,167,121	58,926,557	57,863,523
26	관세청	2,753,666	2,806,531	2,815,705	2,287,000	2,036,400	1,746,400
27	국세청	10,488,811	10,537,212	10,048,146	8,972,330	8,392,955	8,019,459
28	기상청	432,323	409,222	381,995	306,757	259,100	241,267
29	농촌진흥청	905,663	889,923	754,821	803,910	755,621	701,131
30	문화재청	580,036	598,037	601,548	583,659	577,960	572,276
31	방위사업청	875,929	799,226	636,423	562,193	541,574	437,462
32	병무청	700,302	661,556	610,529	500,144	486,295	453,829
33	산림청	811,632	792,770	788,092	777,492	789,609	794,409
34	새만금개발청	93,064	93,064	93,000	60,000	48,000	48,000
35	소방청			402,679	355,179	323,254	356,411
36	조달청	921,315	939,389	979,917	1,000,936	1,026,954	1,046,902
37	통계청	880,396	805,788	705,751	722,058	1,226,561	834,482
38	특허청	1,225,080	1,171,947	1,059,444	1,025,380	826,580	834,300
39	해양경찰청		(신설)	4,138,232	3,009,672	2,941,058	2,861,637
4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3,225	57,000	55,000	50,000	50,000	50,000
위원회(10)							
4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신설)	48,600
4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69,660	-	-	138,000	138,000	39,000
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114,000
44	공정거래위원회	393,958	376,387	360,864	365,710	341,903	301,678
45	국가인권위원회	98,477	100,667	95,740	107,961	108,704	104,174
46	국민권익위원회	440,160	438,288	335,055	322,462	315,424	306,480
47	금융위원회	338,449	346,005	317,301	327,946	305,640	282,520
48	방송통신위원회	205,170	166,350	141,490	126,188	136,307	143,866
49	원자력안전위원회	156,154	160,232	130,560	98,128	94,453	94,752
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548,057	11,311,838	1,256,391	973,496	12,255,504	1,123,160
기타(7)							
51	감사원	281,780	283,280	283,280	285,570	229,700	245,700
5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108,145	1,164,709	1,104,554	933,606	732,969	577,155

53	국회	4,575,150	4,642,056	4,733,196	5,162,157	5,285,543	5,297,504
54	대법원	4,532,006	5,008,132	5,546,827	5,531,827	6,022,827	4,887,827
55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628,835	840,682	840,682	840,682	840,682	840,682
5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7,071	28,648	27,823	28,866	33,501	35,652
57	헌법재판소	103,078	105,669	105,638	104,888	101,888	101,888
	합계	150,923,862	149,910,884	136,742,264	134,339,029	146,398,637	129,479,245

출처: 열린재정

*2016~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빨간색 글자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기관, 파란색 글자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

<표3> 2016~2021년 정부 예산편성기관 특근매식비 전년대비 증가율

	정부 예산편성 기관	17년 전년대비 증가율	18년 전년대비 증가율	19년 전년대비 증가율	20년 전년대비 증가율	21년(안) 전년대비 증가율	증가율 표준편차	16~21년 연평균 증가율
부(18)								
1	고용노동부	-0.30%	1.66%	-0.87%	-3.36%	-1.76%	0.02	-0.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9%	-4.08%	-19.99%	12.00%	-21.31%	0.16	-5.5%
3	교육부	2.83%	-0.18%	-1.66%	-5.50%	-6.12%	0.04	-2.2%
4	국방부	4.41%	5.37%	-1.42%	9.63%	7.62%	0.04	5.1%
5	국토교통부	-2.89%	-55.52%	-12.47%	-7.91%	0.06%	0.23	-19.0%
6	기획재정부	5.40%	-0.29%	-6.70%	0.94%	-0.26%	0.04	-0.3%
7	농림축산식품부	1.53%	5.25%	-16.93%	2.28%	-0.27%	0.09	-2.0%
8	문화체육관광부	2.49%	-3.21%	6.33%	2.43%	-1.29%	0.04	1.3%
9	법무부	0.68%	-16.02%	-11.23%	-2.70%	-2.33%	0.07	-6.5%
10	보건복지부	6.62%	-0.94%	-1.52%	-6.85%	13.44%	0.08	1.9%
11	산업통상자원부	0.10%	0.18%	0.77%	3.92%	3.86%	0.02	1.7%
12	여성가족부	1.25%	-6.95%	4.54%	-5.32%	1.88%	0.05	-1.0%
13	외교부	-2.28%	3.27%	-8.08%	-5.80%	-5.70%	0.04	-3.8%
14	중소벤처기업부	7.43%	11.40%	-1.96%	-6.98%	0.41%	0.07	1.8%
15	통일부	-8.96%	-11.95%	4.16%	-10.72%	2.17%	0.08	-5.3%
16	해양수산부	4.01%	1.89%	-12.89%	-22.56%	7.28%	0.13	-5.2%
17	행정안전부	-6.82%	-40.30%	12.01%	52.54%	-52.05%	0.42	-14.5%
18	환경부	2.33%	11.34%	-0.40%	8.50%	11.70%	0.05	6.6%

처(6)								
19	국가보훈처	7.08%	0.71%	-2.83%	-11.62%	-16.63%	0.1	-5.0%
20	국민안전처	(폐지)						
21	대통령경호처	-26.67%	-9.09%	-10.00%	-22.22%	-14.29%	0.08	-16.7%
22	법제처	1.50%	5.79%	5.80%	-0.36%	2.71%	0.03	3.1%
23	식품의약품안전처	1.89%	-6.33%	-13.37%	-10.79%	-0.08%	0.07	-5.9%
24	인사혁신처	-40.90%	-17.78%	7.33%	-0.49%	-0.06%	0.19	-12.3%
청(16)								
25	경찰청	-1.33%	3.79%	5.31%	-0.41%	-1.80%	0.03	1.1%
26	관세청	1.92%	0.33%	-18.78%	-10.96%	-14.24%	0.09	-8.7%
27	국세청	0.46%	-4.64%	-10.71%	-6.46%	-4.45%	0.04	-5.2%
28	기상청	-5.34%	-6.65%	-19.70%	-15.54%	-6.88%	0.06	-11.0%
29	농촌진흥청	-1.74%	-15.18%	6.50%	-6.01%	-7.21%	0.08	-5.0%
30	문화재청	3.10%	0.59%	-2.97%	-0.98%	-0.98%	0.02	-0.3%
31	방위사업청	-8.76%	-20.37%	-11.66%	-3.67%	-19.22%	0.07	-13.0%
32	병무청	-5.53%	-7.71%	-18.08%	-2.77%	-6.68%	0.06	-8.3%
33	산림청	-2.32%	-0.59%	-1.35%	1.56%	0.61%	0.02	-0.4%
34	새만금개발청	0.00%	-0.07%	-35.48%	-20.00%	0.00%	0.16	-12.4%
35	소방청	(신설)						
36	조달청	1.96%	4.31%	2.14%	2.60%	1.94%	0.01	2.6%
37	통계청	-8.47%	-12.41%	2.31%	69.87%	-31.97%	0.39	-1.1%
38	특허청	-4.34%	-9.60%	-3.22%	-19.39%	0.93%	0.08	-7.4%
39	해양경찰청	(신설)						
4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2.16%	-3.51%	-9.09%	0.00%	0.00%	0.09	-7.3%
위원회(10)								
4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신설)						
4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설)						
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44	공정거래위원회	-4.46%	-4.12%	1.34%	-6.51%	-11.77%	0.05	-5.2%
45	국가인권위원회	2.22%	-4.89%	12.76%	0.69%	-4.17%	0.07	1.1%

46	국민권익위원회	-0.43%	-23.55%	-3.76%	-2.18%	-2.84%	0.1	-7.0%
47	금융위원회	2.23%	-8.30%	3.35%	-6.80%	-7.56%	0.06	-3.5%
48	방송통신위원회	-18.92%	-14.94%	-10.81%	8.02%	5.55%	0.12	-6.9%
49	원자력안전위원회	2.61%	-18.52%	-24.84%	-3.75%	0.32%	0.12	-9.5%
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85%	-88.89%	-22.52%	1158.92%	-90.84%	5.43	-38.3%
기타(7)								
51	감사원	0.53%	0.00%	0.81%	-19.56%	6.97%	0.1	-2.7%
5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10%	-5.16%	-15.48%	-21.49%	-21.26%	0.11	-12.2%
53	국회	1.46%	1.96%	9.06%	2.39%	0.23%	0.03	3.0%
54	대법원	10.51%	10.76%	-0.27%	8.88%	-18.84%	0.13	1.5%
55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3.69%	0.00%	0.00%	0.00%	0.00%	0.15	6.0%
5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83%	-2.88%	3.75%	16.06%	6.42%	0.07	5.7%
57	헌법재판소	2.51%	-0.03%	-0.71%	-2.86%	0.00%	0.02	-0.2%
평균		-0.67%	-8.78%	-1.76%	8.98%	-11.56%	0.08	-3.0%

출처: 열린재정, 나라살림연구소 재구성

*2016~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빨간색 글자는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기관, 파란색 글자는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기관

2-3. 특근매식비 증감 추이

- 2016~2021년 정부 예산편성기관의 특근매식비를 분석한 결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3.0%로 특근매식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남
*2016~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 전 부처에 걸쳐 특근매식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특근매식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부처는 6곳으로 국방부, 국회, 환경부, 조달청, 법제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예산규모 순)으로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8%임

<표4> 특근매식비 증가 기관의 전년대비 증가율(2017~2021년)

예산편성기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2016~2021년 연평균 증가율
--------	-------	-------	-------	-------	----------	-----------------------

국방부	-1.75%	5.37%	-1.42%	9.63%	7.62%	3.8%
국회	1.46%	1.96%	9.06%	2.39%	0.23%	3.0%
환경부	2.33%	11.34%	-0.40%	8.50%	11.70%	6.6%
조달청	1.96%	4.31%	2.14%	2.60%	1.94%	2.6%
법제처	1.50%	5.79%	5.80%	-0.36%	2.71%	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83%	-2.88%	3.75%	16.06%	6.42%	5.7%
평균	0.34%	4.94%	2.83%	6.08%	5.09%	3.8%

출처: 열린재정, 나라살림연구소 재구성

*2017~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 특근매식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기관(부,처,청, 위원회별 예산규모 순)의 2016~2021년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7.2%임
- 정부 예산편성기관 중 특근매식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기관은 6곳인데 반해, 감소하는 기관은 20곳으로 훨씬 많음. 2016~2021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격차가 두드러짐. 특근매식비 증가 기관의 연평균 증가율 평균값은 3.8%로 감소 기관보다 11%p 차이가 남

<표5> 특근매식비 감소 기관의 전년대비 증가율(2017~2021년)

예산편성기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2016~2021년 연평균 증가율
부(4)						
법무부	0.68%	-16.02%	-11.23%	-2.70%	-2.33%	-6.5%
국토교통부	-2.89%	-55.52%	-12.47%	-7.91%	0.06%	-19.0%
외교부	-2.28%	3.27%	-8.08%	-5.80%	-5.70%	-3.8%
통일부	-8.96%	-11.95%	4.16%	-10.72%	2.17%	-5.3%
처(3)						
식품의약품안전처	1.89%	-6.33%	-13.37%	-10.79%	-0.08%	-5.9%
국가보훈처	7.08%	0.71%	-2.83%	-11.62%	-16.63%	-5.0%
대통령경호처	-26.67%	-9.09%	-10.00%	-22.22%	-14.29%	-16.7%
청(8)						
국세청	0.46%	-4.64%	-10.71%	-6.46%	-4.45%	-5.2%
관세청	1.92%	0.33%	-18.78%	-10.96%	-14.24%	-8.7%
특허청	-4.34%	-9.60%	-3.22%	-19.39%	0.93%	-7.4%

농촌진흥청	-1.74%	-15.18%	6.50%	-6.01%	-7.21%	-5.0%
병무청	-5.53%	-7.71%	-18.08%	-2.77%	-6.68%	-8.3%
기상청	-5.34%	-6.65%	-19.70%	-15.54%	-6.88%	-11.0%
새만금개발청	0.00%	-0.07%	-35.48%	-20.00%	0.00%	-1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2.16%	-3.51%	-9.09%	0.00%	0.00%	-7.3%
위원회(4)						
국민권익위원회	-0.43%	-23.55%	-3.76%	-2.18%	-2.84%	-7.0%
공정거래위원회	-4.46%	-4.12%	1.34%	-6.51%	-11.77%	-5.2%
금융위원회	2.23%	-8.30%	3.35%	-6.80%	-7.56%	-3.5%
원자력안전위원회	2.61%	-18.52%	-24.84%	-3.75%	0.32%	-9.5%
기타(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10%	-5.16%	-15.48%	-21.49%	-21.26%	-12.2%
평균	-0.30%	-11.69%	-10.86%	-7.33%	-5.24%	-7.2%

출처: 열린재정, 나라살림연구소 재구성

*2017~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2-4. 특근매식비 편차가 큰 기관

- 업무 특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은 선거 또는 통계조사가 진행되는 해에 특근매식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6~2021년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19대 대통령선거(2017년), 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가 있던 해에 선거관리에 쓰인 예산으로 인해 특근매식비 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함
- 같은 기간, 통계청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로 인해 2020년에만 특근매식비 예산이 전년대비 69.8% 증가함

<표 6> 특근매식비 편차 큰 기관의 예산 규모(2016~2021년)

(단위: 천원)

정부예산편성 기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548,057	11,311,838	1,256,391	973,496	12,255,504	1,123,160
통계청	880,396	805,788	705,751	722,058	1,226,561	834,482

출처: 열린재정

*2017~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표7> 특근매식비 편차 큰 기관의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2016~2021년)

정부예산편성 기관	17년 전년대비 증가율	18년 전년대비 증가율	19년 전년대비 증가율	20년 전년대비 증가율	21년 전년대비 증가율	증가율 표준편차	16~21 연평균 증가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85%	-88.89%	-22.52%	1158.92%	-90.84%	5.43	-38.3%
통계청	-8.47%	-12.41%	2.31%	69.87%	-31.97%	0.39	-1.1%

출처: 열린재정, 나라살림연구소 재구성

*2017~2020년은 국회 확정안, 2021년은 정부 예산안 기준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특근매식비의 전년대비 증가율(2016~2021년)은 2017년 -1.20%, 2018년 -8.72%, 2019년 -1.71%, 2020년 9.03%, 2021년 -11.53%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2016~2021년)은 -3.0%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특근매식비가 감소하는 기관(20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에, 같은 기간 특근매식비가 증가하는 기관(6개)의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감소 기관에 비해 11%p 격차가 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 등이 선거 또는 통계조사가 있는 해에만 특근매식비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침상 야근 및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나 외근을 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특근매식비는 업무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음
-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예산의 증감 또는 초과근무와 무관하게 회식비, 매점 식권 대량 구매, 간식 구매 등 업무추진비로 이용되는 부정집행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특근매식비의 감소가 업무량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